

충청북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중 '시·군사무의 내부위임규정으로'를 '시·군사무위임규칙으로'로 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세무공무원의 수납) 시행규칙 제7조의2제2호에서 '조례가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액 지방세'라 함은 납세고지서 1매당 세액 (가산금을 제외한다)이 500천원 이하인 도세를 말한다.

제19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영 제8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물 및 선박의 시가표준액의 결정기준일은 매년 1월 1일로 한다.

제20조 제1항중 '30일이내에'를 '30일[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6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월)]이내에'로 하고, 동조 제3항중 '한다.'를 '하며, 건설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도급계약서 원본을 과세관청에 제시하여야 한다.'로 하고, 동조 제4항중 '법 제108조제5호와'를 '법 제108조와'로 하며, 동조 제9항중 '자진신고납부한'을 '신고납부한'으로, '자진신고납부하여야'를 '신고납부하여야'로 한다.

제30조 제1항중 '법 제184조의'를 '법 제242조제1항의'로 한다.

제42조중 '목욕용수로 활용하기'를 '목욕용수 및 기타용수로 이용하기'로 한다.

제43조중 '기타 목욕용수는'을 '기타 용수는'으로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